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2. 15 선고 2021나125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2. 15 선고 2021나12542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5. 12 선고 2020가합10156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나리

원고보조참가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송일균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상, 담당변호사 김중훈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세찬

변론 종결2022. 12. 23.

판결 선고2023. 2. 15.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5. 12. 선고 2020가합101569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소송수계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D일자 접수 E로 마친 특허권이전등록,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D일자 접수 F로 마친 특허권이전등록,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D일자 접수 G로 마친 특허권이전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절차를 수계한 후, 피고에 대한 소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H의 대출과 원고의 연대보증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2. 12. 10.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명목으로 750,000,000원을, 2013. 1. 28.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위 각 대출 당시 원고는 위 750,000,000원 대출에 대하여는 보증한도액을 120,000,000원, 위 50,000,000원 대출에 대하여는 보증한도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대출금 채권의 양도양수

1) 위 각 대출금 채권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I 주식회사, J 유한회사(이하 'J'라 한다)로 각 순차 양도되었다. J는 H가 제공한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청주지방법원 K,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2017. 4. 19. 493,620,109원을 배당받았다.

2)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10. 15. J로부터 위 각 대출금 채권 및 보증인에 대한 권리를 비롯하여 위 각 대출금 채권에 수반하는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고, J는 2018. 11. 27. H와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H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특허권이전등록 및 등록 당시 원고의 재산 상태

1) 원고는 2020. 3.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E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F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특허청 G로 각 특허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을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특허권 양도 당시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관련 민사소송

원고보조참가인은 H와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3414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7. 14. 'H와 원고는 연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원고는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보조참가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H와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20나6202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3. 25.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H와 원고가 대법원 2021다226657호로 상고하였으나 2021. 7. 8. 상고가 기각되었다.

마. 이 사건 소송 경과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20. 3.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특허권 양도계약이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특허권 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특허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21개회1081799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22. 6. 2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3) 원고는 이 법원에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원고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위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다음 2022. 12. 16.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 을 제1, 3, 4,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부인권을 행사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특허권이전등록의 말소등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고, 이 사건 특허권이 부인권 행사의 결과로 원고의 재산으로 복귀될 경우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가액산정을 위하여 과다한 감정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결국 그 비용은 개인회생채무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양도에 관한 부인권 행사로 인하여 개인회생재단의 충실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부인권 행사의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가액산정을 위한 감정비용 내지 절차비용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원고가 담당회생위원의 보정권고를 받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게 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부인권 행사가 원고의 개인회생재단의 충실을 저해하여 부인권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보조참가인은 2020. 3. 10.경 이미 H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아 채권양도통지 절차까지 마쳤으므로, 위 양수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J의 담당자인 L으로부터 경매 후 남아 있을 수 있는 H와 원고의 대출금 채무의 탕감을 조건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행사한 M의 채무 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고 이를 수락하여 원고가 위 채무 확인에 협조함으로써 2016. 6.경 J로부터 경매 후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와 H 또는 원고 사이에 채무 면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1의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H와 원고는 위와 같은 채무면제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원고보조참가인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특허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원고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최대주주가 된 P에 의하여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위기에 처하였을 무렵인 2015. 10. 25.경 P의 요구에 따라 'P가 이 사건 각 특허권 등에 설정한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하고, 원고는 P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을 2016. 3. 말까지 지급하되 위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각 특허권을 피고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각 특허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고, 원고가 P와 위와 같은 약정을 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여 소득을 얻고 변제자력을 회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1호증, 을 제5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투자자의 투자금반환소송, 직원의 식품개발기술 유출 등으로 매출액이 급감하여 2013. 12. 30.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4. 11. 2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3회합58호).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당시 피고의 최대주주는 원고의 배우자 N였으나¹⁾, 회생절차에 따라 출자전환과 주식병합 등이 이루어져 피고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던 P가 피고의 지분 52.42%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고, N의 지분은 5.58%, 원고의 지분은 0.8%로 각 감소하였다.

(나) 피고의 최대주주가 된 P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아 2015. 8. 13. 주주들에게 '원고와 N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안건 등으로 2015. 8. 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는데, 실제로 임시주주총회가 성사되지는 아니하였다.

(다) P, 원고 및 N는 2015. 10.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그 내용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약정서

P와 원고 및 그의 처 N는 아래 사항을 약정한다.

1. P는 N에게 제3항의 이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의 지분 52.42%와 피고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함께 우선 양도한다(별첨 주식양도증서).
2. P는 제3항의 이행을 돕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특허권에 설정한 가처분(2013카합71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과 압류(2015타채51242 특허권압류명령)를 우선 해제하며, 이외 현재 강제집행한 2015카명20150 재산명시, 2013타채16234 주식매각명령, 2013타채1223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을 모두 취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대가로 원고와 N는 연대하여 P에게 2016. 3월 말까지 금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4. 제3항이 이행될 때까지 N는 P가 양도한 피고의 지분 52.42%에 대해 매매,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만약 N의 채권자가 있더라도 P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 압류, 가압류 등 어떤 설정행위라도 하면 안 된다.
6. 제1항이 실행된 이후 제3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피고의 어떠한 형태의 주주총회도 불가하며 2016. 3. 말 이전에 주주총회가 필요할 시 P에게 동의를 얻은 다음 주주총회를 실시할 수 있다.
7. 제3항이 완료되지 못하면 2016. 4. 1. 0시를 기하여 제1항에서 P가 N에게 양도한 피고의 52.42% 지분은 별도 약정 없이 다시 P에게 양도(원상회복)된 것으로 하며, 기타 별도로 양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N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8. 제3항이 완료되지 못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지체 없이 피고에게 무상양도한다.

9. 제4, 5, 6, 8항을 어길 시 원고와 N는 연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0. 제3항이 완료되면 P는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2가합100970 사건 판결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다.

(라) 원고는 또한 2015. 10. 25. 채권자협의체 대표채권자 Q에게 '이 사건 약정서 제3항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각 특허권을 피고에게 2016. 4. 1.까지 지체없이 무상양도할 것임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이며, 채권자협의체 및 대주주가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특허 무상양도 이행 확약서(각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P에게 이 사건 약정서 제3항에 따른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특허권은 피고에게 이전되지 않다가 2020. 3. 10.에 이르러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등록되었다.

(바) 원고보조참가인은 양수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20. 3. 9.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광주지방법원 2020카단50537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특허권이 피고에게 이전등록됨에 따라 위 가압류결정은 집행되지 못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을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N가 P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면 N가 P로부터 피고의 지분 52.42%와 피고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함께 양도받되, 원고와 N가 위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이 사건 각 특허권을 피고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P로부터 피고의 지분을 넘겨받는 주체가 원고가 아닌 N이고,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양도를 통하여 원고의 적극재산이 증가하거나 소극재산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약정으로써 원고의 변제자력이 직접 회복되는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약정 제8항에 의하면 원고와 N가 P에게 2016. 3. 말까지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각 특허권을 지체없이 피고에게 무상양도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N가 위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이전등록절차가 수년간

이행되지 않았고(피고는 특허기술가치 평가비용이 과다하여 그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한국발명진흥회에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에 지원신청한 때가 위 의무이행기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직후에 이 사건 각 특허권이 피고에게 이전등록된 점, ③ 원고는 P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 제10항에 기재된 판결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 7. 25. 이 사건 각 특허권을 H에 양도하였고, P는 이를 이유로 H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5717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5027호)을 받은 다음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한 H 명의의 이전등록을 말소하였는바, 유사한 소송 경험이 있던 원고로서는(위 소송 당시 원고가 H의 대표이사였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특허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이 일반채권자인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아 변제자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는 실제로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⑤ 피고는, 원고가 일부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성실히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을 제18, 20,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변제하였다는 차용금채무 자체가 이 사건 약정 이후 발생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와 이 사건 약정 내지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양도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특허권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특허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1항,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특허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변경 전 청구인 원고보조참가인의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재판장판사김진석

판사이종훈

판사서여정

별지

1) 피고의 지분 중 70%는 N, 10%는 원고, 20%는 투자자 0이 보유하고 있었다.